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80호
------	-------

## 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미래전략실장
제출연월일	2022. 11. 14.

예산실장 심사필

# 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0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4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미래전략실장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운영방식을 유료 입장에서 무료 입장으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항목 정리(안 제2조, 안 제5조~제8조)
- 나. 시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조정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대상아님
- 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10. 11. ~ 2022. 10 . 31.(20일간)

나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- 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관광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매주 월요일(단,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)

제5조 전단 중 “별표와 같다”를 “무료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미래전략실장	박 찬 택
	탐정호운영팀장	박 재 옥
	담 당 자	김 주 영 (746-6478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<u>논산시민</u>”이라 함은 <u>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증(논산시에 거소가 된)을 가진 사람</u>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국가유공자</u>”라 함은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<u>국가유공자</u>를 말한다.</p> <p>5. “<u>장애인</u>”이라 함은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<u>장애인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시설 운영시간)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:00시부터 18:00시까지,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:00시부터 17:00시까지로 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내용은 논산시(이하 “시”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제3조(시설 운영시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라 한다)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고지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매주 월요일

5. (생략)

제5조(시설 입장료) 시설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. 다만 시범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시설 입장료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시설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논산시민(논산시 명예시민 포함)

2. 만 7세 미만 유아

3.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
4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)

5. 선(先)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

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매주 월요일(단,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)

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시설 입장료) -----  
무료로 한다. <후단 삭제>

<삭제>

사람 (당일 시 관내 해당 입장료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)

6. 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

7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시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

2. ~ 6. (생략)

제8조(세입 등) ① 시설 입장료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. 이 경우 「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시설의 보완·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제한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[별표]

구 분	일 반	어린이·청소년	유 아
개 인	3,000	2,000	면제
<p>※ 유료 입장객 일반 개인은 입장료 3,000원에 대하여 2,000원을, 어린이·청소년은 입장료 2,000원에 대하여 1,000원을 논산시당 지역화폐로 환급한다.</p>			
<p>《구분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 아: 만 7세 미만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: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</li> <li>- 일 반: 만 19세 이상</li> </ul> <p>《요금 관련》</p> <p>면제(정상요금의 100% 면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산시민(논산시 명예시민 포함)</li> <li>- 만 7세 미만 유아</li> <li>- 국가유공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li> <li>- 선(先)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 (당일 시 관내 해당 입장료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)</li> <li>- 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</li> <li>-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※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</p>			

<삭 제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미래전략실장 박찬택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